

부산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3286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임호택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김해시 B 대 782㎡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1.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1. 2. 1. 접수 제92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2. 8. 6. 보증금액이 255,000,000원인 이행보증보험계약과 2013. 4. 11. 보증금액이 170,000,000원인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의 폐업으로 보증사고를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1. 6. 25. 주식회사 D에 425,597,343원을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C는 2021. 1. 29.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김해시 B 대 7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1. 2. 1. 접수 제92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 아파트 등 시가 합계 1,968,269,180원의 적극재산을 소유하는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3,331,331,71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가 재정상태 악화로 폐업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21. 6. 25.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C가 책임재산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하나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피고의 선의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